

# 프랑스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이향수\*, 이성훈\*\*

건국대학교 행정복지학부 행정학전공\*, 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경제정책학전공\*\*

## A study on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based on case in France

Hyangsoo Lee\*, Seong-Hoon Lee\*\*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Dept. of Economics, Kore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통합정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분석해내고자 하였다. 우선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둘째,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주민통합정책을 지휘하는 부처나 집행하는 기관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이주민 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분석결과 프랑스는 중앙정부수준의 일관성있는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전사회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체류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은 다소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주관할 수 있는 부처를 일원화하여 정책의 통일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의 주요대상은 외국에서 이주한 이주민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도 이주민들로 하여금 좀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체류 등에의 불이익을 주어 참여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프랑스, 이주민, 이민정책, 사회통합, 사회통합추진체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the case of France, which has already implemented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with the interest of the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in advance of Korea. First, we analyzed the system and system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France. Second, we analyzed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promotion system in France, and examined the ministries and the agencies that direct the integration policies of the migrants. Third, the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ion policy of Korean immigrants were derived through the above analysis. As a result, France was promoting a consistent social integration policy at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all members of the society participated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It also encouraged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in conjunction with social integration programs. Based on this, we concluded that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our country should be modified somewhat. First, it is necessary to pursue the unity of policy by uniting the ministries that can manage 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our country. Second, the main target of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our country should include not only immigrants who migrated from abroad but also Koreans. Third, Korea should encourage migrants to participate more in social integration programs and at the same time increase their participation rate by disadvantage of staying.

**Key Words** : France, Immigrants, Immigration policy, Social integration, Social integration promotion system

\* 본 연구는 2017년도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특성화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된 것임.

Received 23 October 2017, Revised 30 November 2017

Accepted 20 December 2017, Published 28 Dec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Seong-Hoon Lee(Korea University)

Email: leeseonghoon@korea.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우리나라의 이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1,899,519명으로 2014년 대비 5.7%(101,901명)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매년 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1]. 이렇듯 이주민 증가로 우리사회에서도 이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주민사회통합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2, 3]. 본 연구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통합정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분석해내고자 한다. 프랑스는 이미 긴 시간동안 다양한 인종이 혼합된 국가라는 점에서 외국 이주민들의 유입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이민의 역사만큼이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관심 역시 매우 길다고 이해될 수 있다[4].

프랑스는 인구가 약 7천만명으로 러시아, 독일 다음으로 유럽에서 인구가 많으며, 이 중 이주민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17%이다. 또한 매년 약 20만명의 이민자가 프랑스로 유입되고 있으며, 가족형태의 이민과 유학생, 노동자 이민이 가장 많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2016년에 프랑스 국적 취득자는 88,775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68,067명(10.6% 증가)은 법령에 의한 국적 취득이고, 20,702명(17.3% 증가)은 결혼에 의한 취득이다. 26,351건의 망명 신청이 수락되었다. 2015년에는 전쟁을 피해서 온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수단 난민들이 많았고, 2017년에는 수단, 아프가니스탄, 하이티, 알바니아, 시리아 사람들이 주로 망명을 신청했다. 또한 2016년에 망명 신청자 총 수는 85,244명(6.5% 증가)인데, 그 중 77,886명이 첫 번째 망명 신청이었고, 7,358명은 재 신청자였다. 이들 중 26,351명의 망명이 수락되었다. 이는 2015년의 19,506명에 비해 35%나 증가한 수치이다 ([http://www.okja.org/europe\\_world/48855](http://www.okja.org/europe_world/48855))[5]. 프랑스의 경우 이민의 역사만큼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역사가 우리보다 오래되었으며, 따라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주민의 사회통합정책이 절실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며, 프랑스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 2.1 연구내용

본 연구의 프랑스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사례분석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역사가 길어 뿐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4, 6, 8, 9]이 프랑스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사례 분석의 주요 내용은 우선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프랑스의 이주와 통합에 대한 법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는 체계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주민통합정책을 지휘하는 부처나 집행하는 기관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분석해내고자 한다. 셋째,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이주민 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또한 결론부분에서는 프랑스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이주민 통합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해외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였다. 문헌조사는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법제도에 대한 기존의 문헌과 프랑스 정책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법무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했던 벤치마킹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프랑스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등에 대한 시사점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동안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회통합정책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적 이주민통합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3.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사례 분석

### 3.1 프랑스 이민정책 법체계

프랑스는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로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주민들에 대한 프랑스로의 이주를 다소 억제하는 강력한 조치들을 시행하고자 하였다[6, 7, 8, 9]. 2006년에 제정된 「이주와 통합에 관한 법률」은 이주민들의 시민권획득에 대한 좀더 강력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선별적인 이민

을 강조하였다[10]. 또한 2006년에 프랑스는 「기회균등법」을 제정하여 이주민을 중심으로 한 소외지역 거주자들에게 대한 차별을 없애고 특히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기회의 제공을 연소자에 대한 견습 교육기회의 제공 등을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다[11]. 또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종전의 16세에서 14세로 낮추어 이주 청소년들이 조기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민통제, 동화, 그리고 망명에 관한 법류」은 2007년에 제정된 법률로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보호유치기간을 예전의 12일에서 30일로 증가시켜 불법체류를 엄격히 금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외국인 입국과 체류 및 망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법에는 외국인 체류규정, 불법이민자 통제, 강제출국명령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12].

### 3.2 프랑스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대상

프랑스의 이민정책은 이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신규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이민자의 자녀 그리고, 프랑스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내용 역시 큰 축을 이루고 있다[13].

우선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전담하는 국립외국인유입이민청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주민들과는 통합수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계약 체결비용은 무료이지만 의무사항이다. 또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프랑스 국가정체성과 프랑스에서의 생활에 대해 교육을 하고, 건강검진, 언어교육, 민법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이민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승진상의 불이익이나 주택입주 거부 등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차별방지 고등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기준에 다소 미흡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민자 자녀를 위한 언어학습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프랑스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모든 이주민들은 프랑스인이라는 전제하에 이뤄지고 있다. 문화다양성 인정 및 남녀평등과 세속주의 등 프랑스 공화국 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민사회에 대한 이해를 고취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

하고 있다.

### 3.3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

프랑스의 이주민통합정책을 추진하는 대표기관은 내무부이다. 이외에도 법무부,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사무소, 고등통합위원회 등이 있다.

내무부는 프랑스 이민정책의 최상위 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는 2007년에 새로 신설된 기관인 ‘이민, 통합, 국민정체성, 공동발전부’로 이민정책 주관기관을 통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2년 내각을 개편하면서 ‘이민, 통합, 국민정체성, 공동발전부’를 내무부로 개편하고 전반적인 이민정책을 총괄하게 되었다. ‘이민, 통합, 국민정체성, 공동발전부’에서는 이주민들의 사회통합보다는 통제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내무부로 총괄기관이 변하면서 이주민 통제 뿐 아니라 이들의 프랑스 사회에 대한 통합정책이나 프로그램 역시 중요 관심사항이 되었다.

둘째, 법무부는 이민과 관련된 중요 사회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결정하지는 않으나 국적취득과 관련된 자료들을 산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적취득관련 자료들을 내무부 등 주요기관이 사회통합정책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셋째, 이민과 통합에 관한 총국은 내무부 산하 기구이다.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 통합, 시민권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민과 통합에 관한 총국의 주요 역할은 프랑스 국적 취득과 취소와 관련된 규칙을 제정하며, 귀화나 국적 선언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 부처로는 이민행정청(OFIG),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처(ACSE)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14].

넷째, 이민통합사무국(OFIG: Office Francais de Immigration et del'Integrqtion)은 내무부 산하기관으로서 2009년에 설립되었다. 기존에 국립외국인 및 이민자 안내기구가 수행하던 취업이민 업무 등을 이관 받아 프랑스 국내의 모든 합법이민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민통합사무소를 설립한 주된 이유는 이주민들이 이주 이후 최초 5년 동안 프랑스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http://www.ofii.fr/>). 이민통합사무국의 주요 업무는 ① 고용주와 취업이민자 연결을 위한 안내서비스 ② 가족재결합 요청에 대해 관할 시청이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의 수입과 주거 상태

감독 ③가족 재결합으로 프랑스에 입국한 가족의 초기 정착지원 등을 한다. 그렇지만 이민통합사무소의 정책방향은 사실 사회통합이라기 보다는 이주민에 대한 통제 성격이 강하다.

내부부의 통제정책은 주로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민통합사무소의 통제정책의 대상은 합법 이민자들이라는 점이 다소 다른 점이다[15].

다섯째,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 Office Francais des Refugies et Apartrides)는 1952년 7월 25일에 난민보호에 대한 국제 협약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행정적,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http://www.ofpra.gouv.fr/>).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을 설립한 목적은 난민보호 및 관련 국제협약과 기타 국제협정 등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협약 및 기타 국제협정, 유엔난민기구 등이 규정하는 난민과 망명자를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등 이들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여섯째, 노동·사회관계·가족·연대·도시부(Ministere du Travail, des Relations sociales, de la Famille, de la Solidarite et de la Ville)는 이주민문제만을 전담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이민관련 통계 자료를 생산해 낸다. 통제지향적인 내무부보다는 좀더 사회통합지향적인 정책들을 선호한다. 즉, 이민자의 사회적응을 강조한다[15].

## 4.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사례의 시사점

### 4.1 중앙정부수준의 일관성 있는 사회통합정책의 추진

프랑스는 여타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보다 중앙집권적인 정책추진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물론 프랑스도 지역마다 사정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프랑스의 경우 독일 등 유럽의 타국과 비교하여 훨씬 더 중앙부처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순응도가 높은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프랑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정책의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매우 큰 편에 속한다.

앞서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분석 및 전문가그룹에 대한 면담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프랑스의 경우 내무부를 중심으로 이민과 통합에 관한 총

국 및 이민통합사무국이 대표적인 이주민통합정책에 대한 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이주민 정책은 일관성 있게 시행된다. 이들 기관 외에도 노동·사회관계·가족·연대·도시부나 법무부 등이 있으나 이들은 이주민사회통합정책을 직접적으로 집행하거나 결정하는 전담기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은 내무부를 중심으로 수행되며 여러 부처가 협력적으로 이주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협의하는 독일에 비해서 정책의 일관된 집행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는 부처를 일원화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14].

### 4.2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전사회적 참여

프랑스의 경우 여타 국가들과 달리 사회통합대상이 이주민에 한정하지 않는다. 이주민, 이주민 자녀 그리고 프랑스 원주민들을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이주민들만의 사회적응도 중요하지만 수용하려는 원주민들의 인식이나 의식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프랑스 정부는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은 주로 이주민임을 생각할 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의 사회통합정책 역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프랑스는 신규이주민, 그리고 이주민의 자녀는 물론이고, 사회구성원들이 이민자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프랑스의 공화국 가치인 남녀평등과 세속주의 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중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14]. 또한 프랑스의 긴 이민의 역사 역시 대중들에게 교육시키고 이민정책이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

### 4.3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체류 등과의 연계

프랑스의 경우 역시 신규외국인은 프랑스 입국 후 통상 3주내에 ‘국립외국인유입이민청’에서 시행하는 사회통합교육에 참여하고 프랑스어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러한 교육 및 프랑스어 시험에서 불합격할 경우에도 언어교육의 수강료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으며, 2007년 이후 도입된 ‘통합수용계약’제도에 의해 이 계약에 서명한 모든 이주민들은 통합프로그램에의 참여에 대

한 비용은 무료이다. 하지만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체류허가 최초 갱신이 허락되지 않으며, 10년 장기체류 허가 발급이 거절된다[14].

## 5. 결론

연구대상인 프랑스는 그동안 비교적 이민 역사도 길고,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의 역사가 길다. 또한 비교적 훌륭하게 사회통합을 이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최근에 유럽에서 난민 문제 등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민정책에 대해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 비교적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인구감소 등의 생산인력 감소로 인한 어쩔수 없는 교육지책인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정책에 있어서 부정적인 사회분위기를 견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사례대상을 프랑스로 정하게 되었다.

기존 문헌분석 및 전문가들의 면담결과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은 크게 몇 가지 점에서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시사점은 기존의 타국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들과는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는 부처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매우 다양하고 분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 부처간 업무나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공유 또는 정책 공조가 없이 단독으로 통합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때로는 유사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수행하는 등 낭비적 요소가 발견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충하는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프랑스의 경우 내무부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정책이 결정되며,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마다 차별적이지 않게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집행된다는 점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역시 사회통합을 주관할 수 있는 부처를 일원화하여 정책의 통일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의 주요대상은 외국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

는 반쪽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원주민들도 역시 이주민들에 대해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어야만 진정으로 사회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 이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이 실패하기 쉬운 이유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극심한 인구정체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더구나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초 고령화 사회로 이동하면서 인구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국가적인 생산성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통합은 정서적이고 연민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매우 실천적인 어젠다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 프랑스의 경우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체류 등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즉,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지 않은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체류허가를 갱신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10년 장기체류 허가 등을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주민들로 하여금 좀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체류 등에의 불이익을 주어 참여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프랑스사례를 분석하여 이주민 통합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함의를 가짐에도 본 연구는 질적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회통합정책의 시사점을 분석함에 있어 양적 접근방법을 통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통해 현재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성공요인 등을 밝혀낼 수 있는 후속 연구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리라 본다.

## ACKNOWLEDGMENTS

This article is financially supported by 2017 College of Public Policy at Korea University.

## REFERENCES

- [1] Y. A. Jung & J. H. Chun, "A Study on multi-cultural

policies in Korea and Japa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10, pp.133-139, 2013.

[2] H. J. Ko, “Language use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A case study of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10, pp.47-53, 2012.

[3] Y. A. Jung & H. S. Kim, “A Method of Using Digital Map to Improve Multicultural Education Efficiency: A Design of ‘e-Atlas of Society and Culture’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to Overcome Contextual Limita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11, pp.13-21, 2014.

[4] W. W. Kwak,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versity of Migrant Integration Strategies between France and Sweden”,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Hanyang University, 2007.

[5] The Huffington Post, dated September 1, 2015.

[6] A. Kim, “International Comparison of Social Welfare Policy for Foreign Residents and Future Direction”, Immigration Bureau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Foreign Policy Headquarters, 2012.

[7] S. Y. An, “A Study of Satisfaction with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through Taekwondo progra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6, pp.535-543, 2017.

[8] S. H. Nam, “The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Foreign Culture by Digital Multimedia Cont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1, pp.59-66, 2012.

[9] S. H. Nam, “App contents plans for convergence education of French literatur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1, pp.281-286, 2014.

[10] Y. K. Lee & H. R. Moon, “A study on the path that the linguistic competence of Marriage migrants affects to the quality of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3, pp.37-47, 2015.

[11] H. Cho & J. K. Ko, “Improvements of the Relevant Act for Working of the Marriage Immigrants’ Family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8, pp.251-263, 2013.

[12] K. G. Han, “Study on Immigration Policy

Promotion System of Overseas Countries”, Immigration Bureau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Foreign Policy Headquarters, 2012.

[13] B. K. Moon, S. W. Lee & J. H. Kim, “Analysis and effective integration of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delivery system”, Ministry of Justice Immigration and Foreign Policy Headquarters, 2013.

[14] B. G. Moon, H. S. Lee, M. C. Hwang, “Policy Development for the Mandatory Attention to the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rogram”,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Justice, 2016.

[15] M. S. Kim, K. W. Hong & Y. Ju, “Building a Policy Paradigm for the Transition to Multicultural and Multicultural Societies (V): Outcomes and Future Tasks of Multicultural Societal Policy”. Korea Women’s Policy Institut, 2011.

이향수(Lee, Hyang Soo)



- 199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 199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
- 200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공인재대학 행정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정책분석 및 평가, 정보화정책, 지식관리
- E-Mail : yun7ju7@kku.ac.kr

이성훈(Lee, Seong Hoon)



- 1990년 2월 :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문학사)
- 1993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 2002년 9월 :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경제학 박사)
- 2011년 3월 ~ 2016년 2월 :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공공경제, 지식자본, 생산성, 산업조직
- E-Mail : leeseonghoon@korea.ac.kr